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7. 19 선고 2023가단104591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7. 12.

판 결 선 고 2023. 7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4,101,212원과 그 중 43,853,605원에 대하여 2023. 6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~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는 2020. 8. 18.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채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, (차량번호 1 생략) 자동차에 관하여 월납부액 1,678,300원, 연체이율 연 24%, 약정기간 48개월로 한 자동차 대여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실, ② 원고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납부액을 연체하자, 월납부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최고한 사실, ③ 그런데도 주채무자와 피고가 연체된 월납부액을 지급하지 않고 예정일을 넘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, ④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연체된 월납부액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월납부액의 원리금 합계 44,101,212원과 그 중 원금 43,853,60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23. 6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에 대하여, 자신이 보증채무금이 얼마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, 주채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.

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중 법률적으로 유의미하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의 주장과 증거 제출은 전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.

판사 김용두